

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광성 의원)

의안 번호	25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년 4월 12일

발 의 자: 김광성 의원

찬 성 자: 이은미, 이창열, 남진삼 의원

1. 제안이유

- 인구 고령화, 운전면허를 보유한 고령 인구의 증가, 고령운전자 교통 사고 치사율 증가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령 운전에 대한 예방책 필요
-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차량을 소유하고 실제 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장려하고자, 지원대상 세분화 및 확대지원을 제안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띄어쓰기 정정 및 자구 수정(안 제9조)
- 나. 교통비 지원대상 세분화 및 확대지원(안 제9조)
 - (현행) 30만원 ⇨ (개정) 차량미소유자: 30만원 / 차량소유자 40만원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도로교통법」
- 나. 예산조치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입법예고: 2024. 3. 18. ~ 2024. 4. 7.(20일간), 의견 없음
- 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4. 3. 7. ~ 2024. 3. 15., 의견 없음

「붙임 1」 조례안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20호”를 “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20호”로, “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”를 “자진하여 반납한 경우에는”으로, “30만원 상당의 교통비 지원을 할”을 “다음 각 호와 같이 교통비를 지원할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차량 미소유자: 30만원
2. 차량 소유자: 40만원(면허반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로 본다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)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만원 상당의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9조(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) ----- --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20호----- 자진 하여 반납한 경우에는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와 같이 교통비를 지원할 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차량 미소유자: 30만원 2. 차량 소유자: 40만원(면허반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로 본다)

<도 로 교 통 법>

제93조(운전면허의 취소·정지) ① 시·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(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(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2호, 제3호, 제7호, 제8호, 제8호의2, 제9호(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), 제14호, 제16호, 제17호,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(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),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.

20.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(失效)시킬 목적으로 시·도경찰청장에게 **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**. 다만,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
연락처	(033) 330 - 2506